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출년월일 : 1993. 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대상제중 후보자 심사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청소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 시상시기를 현실에 맞게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1차심의후 추천하도록 한것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고

○ 청소년대상 후보자 심사 및 결정방법에 있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심사후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추천마감일후 10일이내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토록 함

○ 시상시기를 매년 12월에서 5월달로 개정

□ 내 용

○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 참고자료

○ 현행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전문)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 학교장 또는 수상후보자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1차 심의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추천한다"로 한다.

제5조(수상자 심사 및 결정)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내지 제8조를 제11조내지 제13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인사, 관련단체의장 중에서 추천 마감일후 10일이내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상종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 결정은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시상) 제1항중 "12월"을 "5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